

1. 개정이유

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일괄정비로 「수산자원관리법」 내 수산자원 관리위원회가 폐지되고 해당 기능이 「수산업법」 내 수산조정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정비하기 위함임

2. 주요내용

가. 수산자원관리위원회 관련 조항 정비

- 1) 제19조의2의 제명 “(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 생략 대상)”을 “(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 생략 대상)”으로 변경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의2의 제목 “(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 생략 대상)”을 “(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 생략 대상)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수산업·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3항 중 “「수산자원관리법」 제54조제1항에 따른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”를 “「수산업법」 제95조에 따른 중앙수산조정위원회”로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9조의2(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 의 생략 대상) (생 략)	제19조의2(수산조정위원회의 심 의 생략 대상) (현행과 같음)